

2020 학년도 하반기 훈련과제연구보고서

해양범죄 수사 시 진술증거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심리수사 방안 연구

-범죄심리수사와 유형분석기법 도입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김 용 철

목 차

제 1 장 서 론	4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배경	4
제 2 절 연구의 방법	5
제 2 장 해양범죄의 개관	7
제 1 절 해양범죄의 개념	7
제 2 절 해양범죄의 유형	8
제 3 절 해양범죄의 실태	9
제 4 절 해양범죄의 특징	11
제 3 장 경찰청 범죄심리분석 기능에 대한 고찰	14
제 1 절 경찰청 범죄심리분석 업무 역사	14
제 2 절 범죄분석요원 제도 문제점	15
제 4 장 범죄심리학의 활용 방안	18
제 1 절 범죄심리학에 대한 고찰	18
제 2 절 심리검사 및 평가 방법	21
제 3 절 범죄심리분석을 이용한 범행동기 파악	22

제 4 절 범죄자 유형분석기법	25
제 5 절 심문을 위한 정보 제공	28
제 5 장 범죄자 유형분석기법에 대한 접근	30
제 1 절 범죄자 유형분석기법의 전제	30
제 1 항 범죄현장에서 범죄자 성격이 드러난다.	30
제 2 항 범죄자 범죄수법은 횡수가 증가해도 같다.	32
제 3 항 범죄자 자신만의 방식은 똑같이 남아 있다.	32
제 4 항 가해자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33
제 2 절 범죄자 유형분석기법의 한계	34
제 6 장 결 론	37
참고문헌	39
별 첨	41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배경

바다는 육지와 구별되는 물리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바다는 육지로부터 떨어져 있어 사람의 왕래가 적고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지는 격리·소외성(隔離·疏外性)을 띠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해상의 표면적이 육지보다 훨씬 더 넓고 광활하여 사람의 손길이 제대로 닿을 수 없고 기상여건에 따라 접근이 자유롭지 않은 위험한 대상이기도 하다.

바다의 고유한 특성만큼이나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양범죄도 일반범죄와 다른 특성을 보인다. 해양범죄는 그 규모가 크고 피해정도가 광범위하며 즉각적인 현장임장수사가 힘들고 범죄증거의 수집이나 목격자의 확보가 어려워 실체적인 진실을 파악하기가 매우 힘들다. 따라서 이러한 해양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사의 전 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특수한 수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형편이다.

이러한 수사 환경에 놓여 있는 해양경찰 수사역사는 경찰청 수사역사와 같이하고 있어 그 역사가 결코 짧지 않으며, 해양경찰법상 직무¹⁾를 살펴보면 해양관련 범죄에 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조직 내

1) 해양경찰법 제14조(직무) ① 해양경찰은 해양에서의 수색·구조·연안안전관리 및 선박교통관제와 경호·경비·대테러작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②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해양관련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와 치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③ 해양경찰은 해양오염 방제 및 예방활동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④ 해양경찰은 직무와 관련된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야 한다.

다른 기능과 견주어 볼 때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은 것이 현실이며, 과학수사와 같은 전문적 수사분야에 있어 대외적 의존도가 높고 그 중 ‘범죄 심리’ 분야에 있어서는 불모지와 다름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양경찰 수사절차에 있어 전반적인 범죄심리학 활용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세부적으로는 진술의 정확성 판단을 위한 수사단계에서의 목격자 진술에 대한 심리분석, 수사관이 용의자나 피의자를 상대로 보다 정확한 정보를 더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는 면담기법은 무엇인지와 면담자가 내담자의 기억 활성화를 위한 역할은 어떤 것이 있는 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향후 수사관(범죄분석요원)에 의한 피의자 면담 시 효과적인 진술 증거 수집을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

우선 선행 및 문헌연구를 통해 해양범죄의 특수성을 살펴보고 범죄 심리 분야 활용 가능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효과적인 진술 증거 수집을 위한 범죄분석기법 중 이미 널리 알려진 범죄자 유형분석기법을 살펴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공적인 범죄분석의 요소들을 파악하고 정리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석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관련 문헌들을 검토하였다.

특히 실제 범죄분석요원의 실무 특성을 고려해, 증거의 존재 유무에 따른 적절한 절차와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문헌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비협조적이거나 이상심리의 피의자 등 이른바, 까다로운 피의자의 유형을 구분하여 이들을 효율적으로 다루기에 필요한 정보를 탐색 및 수집하였다.

이와 함께 면담의 중요 목적인 자백획득을 위한 방략을 살피기 위해서 관련 문헌들을 살펴보고 실제 심리검사 기법들을 습득하기 위하여 심리검사 및 평가보고서 작성법을 실습하였다.

제 2 장 해양범죄의 개관

제 1 절 해양범죄의 개념

해양범죄(海洋犯罪)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범죄 또는 유형별로 규정되는 다른 범죄와 달리 법률적·학문적인 개념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해상에 있는 선박에서 저질러지는 범죄”²⁾라고 설명되기도 하는 등 아직까지 통일적인 개념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해양의 물리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를 정의하자면, 해양범죄는 ‘해양과 관련된 법질서 위반행위’로서, 범죄의 발생지를 기준으로 하여, ① 지리적으로 해양에서 발생한 범죄, ② 해양에서 발생하여 육상으로 또는 육상에서 발생하여 해양으로 이어지는 범죄, ③ 해양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해양범죄와 용어상 유사한 형태로 ‘해상범죄’가 사용되고 있는데, 일본 해상보안청의 『범죄수사규범』 제2조 제9호에 의하면, 해상범죄란 해상에서 ‘행해지는’ 또는 ‘시작되는’ 또는 ‘해상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라고 정의되고 있다

해양범죄와 해상범죄가 용어상으로 혼용되고 있지만, 엄밀히 구별하자면 해상범죄는 범죄의 발생 장소가 바다 상이라는 지리적 조건을 강조하는 범죄이고, 해양범죄는 해상 범죄보다 더 넓은 영역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해양과 연관성이 있는 범죄이며 해양이 주된 조건이기는 하지만 범죄가 발생한 곳이 반드시 바다일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바다를 향해하고 있는 선박 위에서 발

2) Maritime crime: Crime committed while on shipboard on the high seas.
<http://wiki.answers.com> 참조

생한 살인이나 폭행, 무허가 조업 등은 해상범죄이자 해양범죄이지만, 어촌계 금·면세유류 관련 횡령·배임사건은 반드시 해상이라는 지리적 조건을 수반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넓은 의미의 해양범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해양범죄의 유형

해양에서 발생하는 사건 혹은 해양과 관련성을 가지고 발생하는 사건 중 법률적으로 규율하여야 할 범죄로는 해양오염사고를 포함하는 각종 해양사고 이외에도 해상에서 벌어지는 살인, 강도 등과 같은 해상강력범죄, 수산업법 위반 범죄 등이 있다.

해양범죄는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유형을 나눌 수 있겠으나, 해양범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서 직접적인 수사의 대상으로서의 범주에 쓰일 수 있도록 유형화를 시도해 보면, 범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가장 기초적인 근거가 되므로, 적용되는 법률의 구분에 따라 ① 형법상 해양범죄, ② 행정법상 해양범죄, ③ 국제법상 해양범죄로 나누어볼 수 있다.

다른 유형으로는 해양범죄의 발생지와 구성요건적 성격에 주목하여 범죄의 발생지 특성에 따른 해양범죄의 유형으로, ① 일반범죄와 동일한 구성요건을 이루지만 장소적으로만 해양에서 발생하는 범죄, ② 오직 해양에서만 발생하는 해양고유의 범죄(주로 해사행정법위반 범죄가 이에 해당함)로 구분한다.

제 3 절 해양범죄의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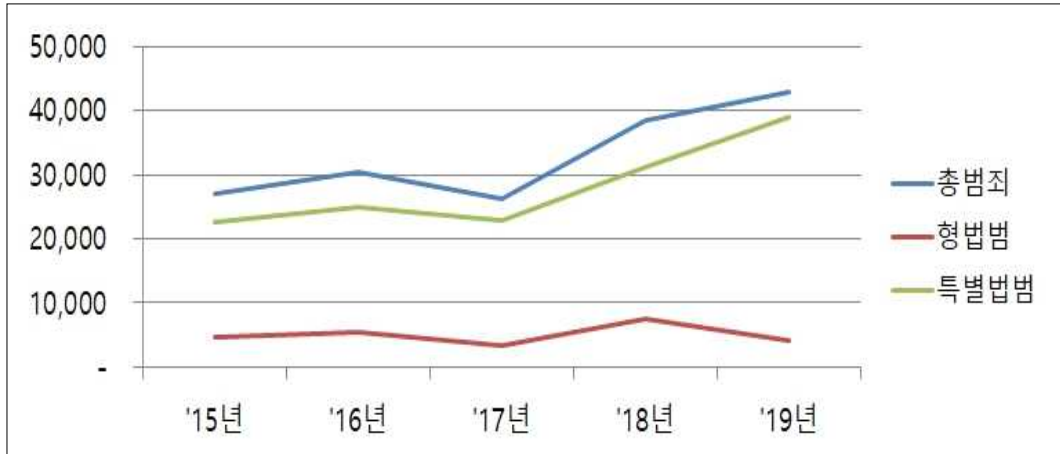
해양경찰청 내부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5년 동안 해양범죄 발생 누적건수는 165,142건 발생, 163,975건 검거했으며, 이는 연평균 33,028건 발생, 검거율은 99.3%로 나타나고 있다. 발생지에 따른 비율은 5년 평균 육상 30.3%, 해상 69.7%로 약 70% 해상에서 발생되고 있고, 관서별 검거건수는 부산 23,335건, 여수 17,336건, 인천 15,193건 순으로 상위를 이루고 있다.

검거자의 법령별 비율을 보면 특별법범이 139,815건(85.3%), 형법범 24,158건(14.7%)이며, 주요 특별법범으로는 공유수면 관리매립법, 수산업법, 어선법 순으로 무면허·무허가·허가 이외의 조업, 무면허운항 등이다.

[표 1] 해양범죄 총괄

(단위 : 건)

구 분	발 생	검 거		검거율 (%)	조 치	
		건 수	인 원		구 속	불구속
'20년 7월	22,044	21,837	4,265	99.1	81	4,184
'19년	42,938	42,699	8,157	99.4	159	7,998
'18년	38,487	38,168	7,882	99.2	156	7,726
'17년	26,215	26,035	7,236	99.3	158	7,078
'16년	30,415	30,040	6,706	98.8	177	6,529
'15년	27,087	27,031	5,866	99.8	205	5,661



[표 2] 형법범 검거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폭력범죄	재산범죄	과실범죄	기 타
'20년 7월	1,979	132	1,453	218	176
'19년	3,865	272	2,254	444	895
'18년	7,217	639	3,143	427	3,008
'17년	3,182	231	1,059	360	1,532
'16년	5,379	224	4,230	321	604
'15년	4,515	296	3,423	365	431

[표 3] 특별법범 검거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수산사범	안전사범	환경사범	국제사범	기 타
'20년 7월	19,858	3,082	7,666	371	262	8,477
'19년	38,834	5,029	17,119	456	1,147	15,083
'18년	30,951	4,882	15,729	826	198	9,316
'17년	22,853	4,630	11,710	1,786	227	4,500
'16년	24,661	4,768	8,076	1,818	1,147	8,852
'15년	22,516	4,585	10,481	670	354	6,426

제 4 절 해양범죄의 특징

해양범죄의 개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양범죄는 매우 다양한 형태의 범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해양범죄의 특징을 서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다만, 해양범죄 중에서 장소적 성격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선박 및 항해와 관련되어 벌어지는 해양범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에서는 경계 설정이 어렵고, 해양을 통해 다른 국가와 필연적으로 인접되어 있어 상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자연환경적 상태에서, 국가 간의 교역이나 왕래에 선박이라는 비교적 대규모의 운송수단이 이용되고 있고, 이 선박의 선적이나 종사자의 국적, 심지어는 운송화물의 소유자까지 국가간의 관계가 복잡다양하게 얽혀 있어 관할권의 적용을 어렵게 하는 등 국제성을 띤다.

둘째, 선박의 특성상 다수의 사람이 항해·운송작업에 참여하여야 하고, 운송하는 재화의 단위가 비교적 큰 편이어서 범죄규모가 대형화되어 있다.

셋째, 바다에는 사람이 정주(定住)하지 않아 고립된 선상에서 의도적으로 은밀하게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목격자 또는 증인의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다.

넷째, 바다를 통하여야 하는 해양범죄의 속성상 선박을 이용하여야 하고, 범행수단으로서 선박을 가동·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가진 다수의 인력과 육상시설을 필요로 하므로 이들을 유기적으로 조합할 수 있는 조직성과 전문성을 띠게 된다.

다섯째, 해양범죄를 감행하기 위해 범법자들이 활용하는 해상과 연안의 영역이 매우 넓은 광역성을 띠고 있어 범죄단속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여섯째, 해양범죄가 발생하면 그 피해의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미치는 파급효과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매우 광범위하다.

위와 같이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해양범죄의 특징에 더하여 해양경찰이 수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해양범죄의 특징을 살펴보면, 삶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산업법 위반사범의 비중이 상당히 크고, 강력범죄와 달리 민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행정법·특별법 위반 사범의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해양범죄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해양범죄 중에서 특별법 위반사범이 2014년 11,094건(82.7%), 2015년 22,557건(83.2%), 2016년 24,980건(82.1%), 2017년 22,914건

(87.4%), 2018년 31,092건(80.7%)으로서, 단순 수치상 비교로도 특별법범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³⁾

해양경찰이 취급하는 사건 중에서 일반범죄와 동일한 구성요건을 가졌지만 해양에서 일어나는 범죄와 특별법범을 제외한다면 순수 해양범죄 고유의 특성을 지닌 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그 발생빈도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해양경찰이 대상으로 하는 사건의 경우 범행 현장이나 사용된 범행 도구 등이 바닷물에 영향을 받아 오염될 우려가 크다. 특히 지능적인 범법자의 경우 완전범죄를 꿈꾸면서 범죄의 실행 장소로서 또는 증거물의 유기장소로서 바다를 이용하기도 한다. 바닷물에 오랜 기간 잠겨 있던 사체는 그 신원을 파악하기가 거의 힘들고, 바닷물에 오염된 범행흉기에는 지문 등의 기초적인 증거자료가 퇴색되어 수사에 필요한 단서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와 같이 해양범죄는 일반범죄와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지금까지 일반적인 범죄에 적용되었던 과학수사기법보다는 이러한 해양범죄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해양범죄 특유의 과학수사기법을 개발함으로써 실제 사건수사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3) 2015년 특별법범 22,516건 중 수산사범이 4,585건(20.3%), 안전사범이 10,481건(46.5%), 2016년 특별법범 24,661건 중 수산사범이 4,768건(19.3%), 안전사범이 8,076건(32.7%), 2017년 특별법범 22,853건 중 수산사범이 4,630건(20.2%), 안전사범이 11,710건(51.2%), 2018년 특별법범 30,951건 중 수산사범이 4,882건(17.7%), 안전사범이 15,729건(50.8%), 2019년 특별법범 38,834건 중 수산사범이 5,029건(12.9%), 안전사범이 17,119건(44.0%), 2020년 7월까지 특별법범 19,858건 중 수산사범이 3,082건(15.5%), 안전사범이 7,666건(38.6%),으로, 특별법 위반사범 중에서는 수산 및 안전 관련 법령 위반사범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해양경찰청, 내부통계자료).

제 3 장 경찰청 범죄심리분석 기능에 대한 고찰

제 1 절 경찰청 범죄심리분석 업무 역사

한국은 2000년 서울지방경찰청에 범죄분석실을 설치하면서 강력사건들에 대한 범죄 심리분석을 시작하였고 같은 해에 경찰청은 과학수사과에 심리학자, 범죄학자, 정신분석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범죄심리분석 자문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주로 범죄 프로파일링이라 하며, 이 들을 범죄 프로파일러라 통칭하고 있다. 학자를 중심으로 한 자문형식의 범죄 프로파일링을 도입한 점은 영국의 초기 도입과 매우 비슷한 모습이다. 영국은 현재에도 Liverpool 대학에 범죄 프로파일링 연구 부서를 별도로 두고 있으며 이 부서에서 여러 명의 프리랜서 범죄 프로파일링 요원들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영국과 비슷하게 수원의 경기대학교에서 Profiling 전문가 과정을 개설하여 대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범죄 프로파일링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경찰청의 범죄 프로파일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크게 경찰청의 과학수사센터와 각 지방경찰청의 과학수사계 두 형태로 나뉘게 된다. 우리나라는 해외의 경우와 다르게 데이터베이스를 별도의 부서를 두고 관리하지 않고 있으나 2004년 개발한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에 범죄분석 항목표를 토대로 한 중요 강력사건 자료를 저장하여 현재 상당한 양의 자료가 축적되었다.

경찰청 내 범죄분석요원의 주요업무는 중요 강력사건 범죄자 면담을 통해 프로파일링 기초자료 구축, 범인 유형 및 동기 분석을 통한 수사방향설정 및 범인검거지원, 참고인 진술의 신뢰성 및 피의자 신문기법 제시, 지리적 프로

파일링 기법 등 과학적 범인 추정 기법 연구 및 개발 등이다.

제 2 절 범죄분석요원 제도 문제점

한국에서는 강력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모든 강력사건에 대하여 범죄분석요원이 초동조치에서부터 사건 현장에 입장하여 범죄 프로파일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수사관이 일선 경찰서 형사·수사과장에게 보고한 후 형사·수사과장이 범죄 프로파일링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지방경찰청 혹은 경찰청에 범죄 프로파일링을 의뢰할 수 있다.

이러한 수사진행방식으로 인해 범죄분석요원은 강력사건 발생 시 자발적으로 많은 초기현장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채 추후에 사진, 영상, 수사기록, 현장 출동 경찰관의 정황진술 같은 주관적이고 왜곡될 가능성이 높은 정보를 토대로 범죄를 분석할 수밖에 없다.

일선 경찰서의 형사·수사과장은 관할 밖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 뿐 아니라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범죄발생 정보만을 토대로 수년전, 수개월 전의 타 관할의 사건과의 개연성이나 연쇄성을 쉽게 간파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연쇄성이나 개연성을 사건 발생 초기에 간파하고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을 때에는 수사의 기간이 지연될 뿐 아니라 인력을 낭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영국의 경우에는 일선 수사관이 수사 도중 범죄 프로파일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National Helpline을 요청할 수 있으며 NPJA에서 이 요청을 받아들이면 고위직 경찰관은 어떤 분야의 분석요원들이 수사에 필요한지 판단하여 심리 프로파일링 요원, 지리학적 프로파일링 분석 요원, SCAS Senior

Analyst, National Search Advisor, National Injuries Database 등의 필요 인
원들을 모집하여 수사팀을 구성한 후 수사를 진행하게 한다. 범죄분석요원에
게 수사개입 우선 결정권이 없다는 점은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수사진행 시
에 수사관들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범죄분석요원이 팀을 이루어 함께 한다
는 점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이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범죄분석 항목표 작성 시점이 수사 · 형사과장의 요청이 있는 후이
기 때문에 SCAS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야 할 중요한 범죄사례들이 범죄 프
로파일링 전문가의 시각에서 선별되지 못한 채 누락될 수 있는 우려도 있다.

이 경우 또한 영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특정 유형의 범죄 발생 시 초동조치
에 임장한 경찰관이 의무적으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범죄분석요원이 정밀
내용을 추가하여 2차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다.

경찰청 범죄분석업무 운영지침을 살펴보면 범죄분석 업무의 내용에는 자료
의 수집, 분석에 관한 내용과 더불어 한국적인 범죄 프로파일링의 연구와 개
발에 대한 업무가 규정되어 있지만 별도의 연구부서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
문에 충분한 연구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며 지원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영국
과 미국, 캐나다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미국은 BAU와 BSU에서, 영국
은 COS와 SOC 부서에서 범죄 프로파일링 전문 연구만을 맡아 수행하고 있
다. 하물며 범죄 프로파일링의 역사가 깊은 국가의 경찰에서도 지속적인 연구
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연구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범죄 프로파일링업무를 하고 있는 범죄분석요원들의 의견을 보
면 범죄 프로파일링 업무와 관련 없는 기타 업무의 과중한 부과로 인한 불만
이 매우 높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할 수 있는 업무 시간이 보장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범죄분석요원들은 범죄 프로파일링 업무를 할 시간조차 부족한 상황에 단순
행정 업무가 과도하게 부과되기 때문에 새로운 범죄 프로파일링 기법을 시도

하거나 국내 상황에 적합한 기법을 찾아내는 데 필요한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데 따른 불만과 그에 따른 업무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고 분석되어 진다. 또한 실무경험의 부재는 범죄분석요원의 범죄 프로파일링과 실제 수사에 괴리가 생길 뿐 아니라 일선 수사관들의 범죄분석요원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기도 하다.

제 4 장 범죄심리학의 활용 방안

제 1 절 범죄심리학에 대한 고찰

인간의 행동을 학문적으로 설명한다면, 어떤 학문이라도 제각기 한 몫을 차지할 것이라는 주장을 배제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행동은 수없이 많은 원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이러한 원인들은 제각기 적합한 학문에 의해 충분히 설명되기 때문이다.

인간행동을 어떤 특정학문에 의해서 설명하기보다는 포괄적 입장에서 접근하려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이다. 여러 가지 학문을 묶어 만든 통합적 성격의 행동과학(behavioral sciences)은 인간행동을 이해함에 있어 어떤 특정 학문보다는 포괄적인 입장에서 접근한다. 하지만 모든 학문을 원용하여 설명하는 것은 초점을 흐리게 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노력해야하는 문제를 낳기도 한다. 때문에 범죄행동과 가장 관계있는 학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사회학, 법학, 심리학은 대체적으로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범죄행동은 범죄의도가 전제 조건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사회규범이 와해되어도, 신체조건이 범행과 관계있어도, 결국은 범죄자 자신이 그러한 행동을 의도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한다. 범죄 의도는 분명하게 '심리적 결정'이다. 때문에 심리학은 모든 범죄행동을 설명하는 데 기초가 된다.

심리학은 어떤 행동이 범죄인지 아닌지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러한 행동이 왜 발생하였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또한 범죄원인을 해석함에 있어 환경적 조

건보다 성격, 태도, 지각 같은 심리적 변인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환경적 조건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경우에도 환경 자체가 아닌 환경에 의해 형성된 성격 특성 같은 개인변인이 관심의 대상이 된다.

사회학은 범죄행동을 규명하려는 최초의 학문으로 인정받는다. 하지만 사회학(특히 초기 사회학적 범죄학)은 범죄행동을 설명함에 있어 주로 사회구조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하여 범죄의 발생을 사회의 구조적 불균형에서 찾으려 하며, 특히 사회계층간의 갈등, 빈곤 같은 변인으로 해석하려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범죄자의 개인차를 무시하고 각 개인을 동일 차원에서 범죄의 가능성을 갖는 것처럼 다룬다.

법학은 일단 발생한 행동에 대한 법적 적용에 관심을 갖는다. 어떤 행동이 범죄인가 아닌가를 구별하고 범죄라고 한다면 얼마나 무겁고 심각한 것인가에 관심을 둔다. 법적용을 위해 범죄행동의 원인을 중요 주제로 다루고는 있지만, 일차적 관심은 이미 저질러진 행동의 법적 해석에 있다.

이에 반해 심리학은 공격적 행동에 대한 개인차에 관심을 갖는다. 심리학적 해석은 범죄행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해석 방식 중의 하나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범죄심리학(Criminal Psychology)은 범죄 혹은 범죄자의 심리적 측면을 다루는 학문이다. 심리학이 인간의 행동과 정신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한다면 범죄심리학은 범죄행동의 심리학적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범죄심리학은 범죄학의 한 분야로서 범죄사회학자나 정신의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형사사법 분야에 심리학의 활용도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심리학적 원리들을 기초로 하여 범죄와 범죄인의 행동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전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는 범죄학의 발달과 그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순수히 심리학적 관점에서만 연구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범죄심리학적 연구의 역사와

정의를 고려할 때 그것은 범죄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중의 하나이며, 넓게는 실증주의 범죄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봐야 한다.

즉, 범죄심리란 좁은 의미로는 반사회적인 실정범위반행위를 뜻하는 범죄행위 또는 넓은 의미로는 흔히 공동체나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규범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하는 일탈행위를 저지르는 데에 있어 그 행동의 배경인 심리적 메카니즘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범죄심리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범죄의 근본적인 동기와 원인, 그리고 행동과학적인 설명 등을 밝히는 것이 범죄심리학의 목적이다. 범죄심리학에서는 어떤 행동이 범죄인지 아닌지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러한 행동이 왜 발생되었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또한 범죄원인을 해석함에 있어서 환경적 조건보다는 오히려 성격, 태도, 지각 같은 심리적 변인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물론 환경적 조건에 관심도 갖지만, 환경 자체가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형성된 성격과 특성 같은 개인변인이 관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범죄자가 처해있는 사회적인 환경과 구조적인 요인에 더 큰 관심을 쏟는 범죄사회학적인 접근에 비해 범죄심리학적인 설명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소질과 성격상의 특성이 범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는 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범죄심리학에 대한 국내학자의 개념적 정의에서도 개인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조건 지어진 환경보다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범죄심리학은 범죄자에 대한 지식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체계화함으로써 범죄자를 보다 타당하게 이해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학문이라는 정의와 범죄심리학은 심리학의 일반적인 원리와 이론을 범죄와 관련된 현상들에 적용시켜 범죄자의 행동을 설명하고 범죄행동의 교정과 예방을 다루는 응용심리학 분야라는 정의는 모두 개인의 행동이 사회환경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범죄심리학의 학문적 연구결과들이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있어

활용될 수 있는 방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2 절 심리검사 및 평가 방법

심리검사(Psychological Tests)는 성격, 지능, 적성 등 인간의 다양한 심리적 특성을 파악할 목적으로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하여 양적, 질적으로 측정하고 해석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행동표본을 표준절차에 따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수량화하여 지표로 환원시키는 행위이다. 이러한 심리검사와 함께 면담, 행동관찰 등 여러 다른 방법에 의해 최종적으로 심리평가라는 것이 이루어지며 심리평가는 심리검사와는 다르게 개인에 관한 사회적, 교육적, 직업적, 과거력 정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얻은 정보들을 통합하는 과정이다.(APA, 1985)

심리평가 절차를 살펴보면, 첫 번째 심리검사의 종류 및 절차의 선택이다. 심리평가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심리검사를 선택한다. 어떤 검사도 인간의 모든 영역을 다룰 수 없으므로 검사는 Battery 4)형태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선택된 심리검사를 표준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세 번째는 면담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 이 때 행동관찰 및 필요시 가족면담, 학교 생활기록부 등 추가정보 수집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자료의 종합 및 보고서 작성이다. 심리검사, 행동관찰, 면담, 기타 방법을 통해 얻어진 정보와 자료를 연결하여 통합, 해석한 후 심리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럼 심리평가를 통해 어떻게 통합, 해석하는가 살펴보면, 검사점수는 주로

4) Full Battery : 지능검사지능검사(K-WAIS-IV, K-WISC-IV, K-WPPSI), 객관적 성격검사(MMPI-2, K-PRC,CBCL), BGT, SCT, HTP(KFD), Rorschach

양적 측정치를 제공하는 검사를 통해 얻게 된다. 각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영역에서 피검자가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고 검사 점수에만 근거를 두는 기계적 접근방식만 취한다면 검사행동, 과거 발달력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해석적 정보는 무시되고 말 것이다. 반응 내용과 주제는 주로 투사적 검사를 통해 얻게 된다. 반응의 양적인 측면이 아닌 질적인 측면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 '피검자가 실제로 한 반응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정보의 출처이다. 다음으로 검사에 대한 태도는 검사 수행과 관련한 피검자의 태도와 감정 등 다양한 검사행동으로 검사자료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한다. 끝으로 검사자와 피검자 간의 관계를 살펴 보면서 평가를 마무리 한다.

물론 심리검사도 여러 가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심리검사는 절대 마법의 틀이 아니며, 가장 훌륭한 심리검사 도구는 내담자와 대면 상황에서 진행되는 면접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시간 또는 상황적 제약상 심리검사 도구를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면접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다. 즉 면접기술 향상을 통해 나 스스로가 훌륭한 검사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교육 중 심리평가실습을 위해 실제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심리검사를 진행한 후 평가보고서⁵⁾를 작성해 보았다. 실제 주호소문제가 있는 수검자를 직접 섭외하여 진행하였으며 향후 범죄자를 대상으로 이상심리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경험으로 삼고자 했다.

제 3 절 범죄심리분석을 이용한 범행동기 파악

5) 심리평가보고서(BGT, HTP, KFD, SCT, K-WAIS-IV, MMPI-2), 2020. 5. 7. 시행(별첨 참고)

범죄심리분석기법은 검거된 범죄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범죄의 직접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심층적인 범죄동기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이미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종합적인 이해를 시도하는 분석기법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범죄자의 범죄심리분석을 위해서는 연구자와 범죄자 사이에 신뢰감이 형성된 편안한 분위기에서 연구자가 범죄자를 충분한 시간동안 심층면접을 하면서 범죄자의 성장과정과 가족관계, 학교생활, 친구관계, 사회를 보는 시각, 그리고 해당범죄행위의 발생을 전후한 여러 가지 사정 등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범죄심리분석기법이 수사기관의 범행관련 조사와 차이가 나는 점은 범행의 직접적이고 표면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범죄자의 성격을 형성하고 현재의 행동을 유발하는데 있어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되는 근본적이고 심층적인 동기들을 파악하기 위해 과거의 다양한 경험과 생활사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들을 분석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미 검거된 범죄자에 대한 심층면접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연구자가 해당 범죄자와 범죄행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여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과 정황들을 파악함으로써 범죄자와 인식의 공감대를 넓게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범죄자와 인식의 공감대를 넓게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범죄자의 허위진술을 재빨리 파악해 거짓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답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거나 사소한 문제에 집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범죄자에 대한 심리분석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범죄자가 수사기관에 체포된 직후에 심층면접을 실시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범죄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심층면접을 실시하는 방법이다.⁶⁾ 첫

6) 이러한 방법은 미국연방수사국(FBI)의 전문수사관이면서 현직 경찰요원들을 대상으로 응용심리학을 강의하던 존 더글라스(Jone Douglas)가 자신의 강의내용에 현실감과 권위를 불어넣는 방안으로 시작하였는데, 실제로 흉악범을 면담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고, 흉악범의 실물을 직접봄으로써 실물에 대한 감각을 높이고, 또 그들의 입장에서 사건을 조

번제의 방법은 범죄자의 기억이 상대적으로 뚜렷한 상태에서 범행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여 진술하는 장점이 있지만, 범죄자가 수사기관에 체포된 직후의 불안정한 상태에 있고 아직 형이 선고되기 전이기 때문에 여죄추궁으로 보다 심한 처벌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심리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솔직한 진술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단점으로 보인다. 현재의 피의자 면담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에 실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의 피의자로부터 진실성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두 번째 방법은 이미 형이 확정되었고 어느 정도 수감생활에 익숙해져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심층면접을 실시하기 때문에 범죄자와 친밀감과 신뢰감만 형성되면 솔직한 답변을 유도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범행당시의 자세한 상황에 대한 기억이 부정확할 가능성이 있고 여러 번의 조사와 재판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논리를 구축하여 상투적인 답변으로 일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범죄심리분석기법을 응용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범죄심리과 범죄분석실에서 범죄원인, 범죄환경, 범죄예방,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업무와 범죄 피해자와 목격자의 기억 향상 및 효율적인 심문기법 등에 대한 연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00년 4월에는 경찰청에 범죄심리분석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된 살인사건의 경우 레이상심리에 의한 범행여부를 판단하고 성격, 생활사, 범죄동기 등에 대한 파악을 통해 범죄심리학적 측면과 행동과학적 측면에서의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범죄의 직접적인 원인과 근본적인 동기를 파악하여 유사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만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시에는 수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사례들의 수집에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0년 4월에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개사육장 잡부의 연쇄살인사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범인이 노름판에서 심부름

망해 본다는 장점과 구체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을 해준 대가로 2,500원에 불과한 개평을 가지려다가 시비가 붙었기 때문에 돈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성급하게 보도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범죄 심리분석자문위원회의 심층면접을 통해 범인이 사회로부터의 오십 년이 넘는 세월동안 받아온 수모와 차별에 대한 깊은 반감과 어렸을 때 범인의 아버지가 군인으로부터 당한 폭력 때문에 고통을 받다가 돌아가신 기억 때문에 폭력에 대한 거부감과 피해의식이 형성된 것이 보다 근본적인 범죄동기임이 밝혀진 경우가 있었다.

제 4 절 범죄자 유형분석기법

인간의지의 외적 표현인 행위에는 반드시 인간의 심리가 작용하여 그 심리적인 흔적을 남기기 마련인데, 이는 인간의 어떤 행위에 대한 의미를 파악해 보면 그 사람이 행위를 할 당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범죄심리에 관한 지식은 범죄단서의 발견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진술·도주·증거인멸·위장 등의 심리를 포착하여 수사의 기술로 이용될 수가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수사경찰은 범죄현장에 남아 있는 증거나 유류품만으로 용의자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종종 범죄 심리학자들에게 자문을 구해 수사의 방향을 정하거나 용의자의 수를 압축하는데 도움을 받기도 한다. 이와 같이 동일인에 의한 범죄는 공통성을 지닌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범죄전의 준비행적, 범죄행위의 특성, 피해자의 특성, 범죄후의 행적 등의 소위 범죄수법을 파악하여 범죄자의 유형을 추정하는 수사기법을 범죄자 유형분석기법이라고 한다. 이처럼 수사상의 자문을 구하는 경우는 주로 잔인한 대인범죄와 범인의 성격이나 뚜렷한 감정의 흔적이 남아있는 범죄에 한정되어 제

한된 범위 내에서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범죄자 유형분석기법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범죄자가 정신병리학적인 징후들을 나타내 보여주는 사건들에 있어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범죄자 유형분석의 목적은 범행현장에 남아있는 증거들을 가해자의 성격유형이나 특징을 알려주는 단서로 인식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범죄자 유형분석기법은 범죄자의 행동과 성격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프로필을 만들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범죄자의 유형을 미리 예측하는 고도의 수사 기술을 말한다. 이처럼 범죄심리학과 행동과학의 전문적인 지식을 범죄수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응용하는 분야가 바로 범죄자 유형분석으로 알려진 전향적인 수사기법인 것이다.

물론,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 달려간 수사관들이 가장 먼저 알아내고자 하는 것은 과연 누가 어떠한 이유에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가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해,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우선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용의자와 범행동기이다. 그렇지만, 범죄현장에 남아 있는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심리적 증거들을 파악하는데 있어 전문적이고 특별한 능력을 가진 수사관들은 물리적 증거뿐만 아니라 심리적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범죄가 사전에 계획된 것인지 아니면 우발적으로 비이성적인 사건의 전개과정의 결과로 발생한 것인지를 알아낼 수 있고 이러한 판단은 범죄의 성격을 규정하도록 해준다.

이러한 범죄자 유형분석기법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아서 코난도일의 탐정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인 셉록 홈즈나 에드가 알렌 포와 같은 소설가의 작품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사건수사를 진행해 나가면서 범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사건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수사실무에 활용되어 왔다. 따라서, 범죄현장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추리방법을 활용

하여 물리적인 증거와 함께 심리적인 증거들을 수집하고 해석하여 가능한 용의자의 특징들을 묘사하고 프로필에 맞는 용의자들로 수사의 방향을 유도하여 용의자의 수를 줄임으로써 불필요한 경찰력의 낭비를 막는 효율적인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범죄자 유형 분석기법이다.

이와 같이 범죄심리학적 연구결과를 활용한 수사기법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탐구하여 실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있어 현지경찰을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개발한 곳은 미국연방수사국(FBI)의 행동과학부이다. 미연방수사국에 따르면 범죄현장에 남겨져 있는 수사단서들은 범죄사건의 해결로 이끄는 데 있어 값을 따지기 힘든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단서들이 손이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적 증거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따라서, 때로는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심리적 증거들과 단서들이 범죄현장에 분명히 존재하지만 비전문적인 경찰관들이 이러한 단서들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연방수사국에서는 범죄자의 심리에 대한 행동과학적 측면의 연구결과들이 범죄현장에 남아 있는 분노, 미움, 두려움, 사랑 등과 같은 범인의 감정들을 파악하고 다양한 성격의 흔적들을 눈에 보이는 증거로 인식할 수 있도록 경찰관들을 가르치는데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범죄자 유형분석은 어떤 특정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훈련된 시도인 것이다.

물론 범인에 대한 프로필은 모든 정보를 다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각각의 프로필마다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범죄현장에 어떠한 증거들이 남아 있고 어떠한 증거들이 남아 있지 않은가에 달려 있다. 물질적 증거들과 마찬가지로 심리적 증거의 종류와 남아있는 양이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범인에 대한 프로필도 또한 변한다. 범행현장에 남아있는 사소하고 조그마한 심리적 증거들을 놓치지 않고 면밀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여 사

건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나가는 범죄자 유형분석기법을 물질적 증거를 찾아 사체를 해부하는 부검과정에 비유하여 살인자에 대한 심리학적 해부작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제까지 범죄자 유형분석기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밖에도 여러 종류의 프로파일링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목소리와 언어를 분석하여 범죄자의 유형을 파악하는 기법을 말하는 ‘언어 프로파일링’, 두 개의 범죄가 동일인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파일링기법인 ‘연관성 프로파일링’, 그리고 범죄자의 거주지역을 파악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법을 의미하는 ‘지정학적 프로파일링’ 등이 범죄수사에 활용될 수 있다.

제 5 절 심문을 위한 정보제공

범죄심리학의 연구결과들이 해양경찰수사에 활용될 수 있는 세 번째 방안은 어떤 특정사건의 용의자가 나타났을 경우에, 범죄심리학과 행동과학을 활용해 축적된 범죄자의 행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프로파일링을 통해 파악된 범인의 성격에 관한 정보를 용의자에 대한 전문지식과 프로파일링을 통해 파악된 범인의 성격에 관한 정보를 용의자에 대한 심문조사 과정에서 범인을 확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응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용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 중의 하나는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하는데, 프로파일링으로부터 얻게 된 범인의 성격에 대한 통찰력은 무엇이 그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는 조사관정에서 용의자에게 어떤 부분은 언급을 회피하고 다른 보다 중요하고 범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대한 철저하고 단호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통찰

력을 제공할 것이다.

다시 말해, 프로파일링은 용의자에 대한 심문과정에서 수사관이 알아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수사관의 동일한 질문에 대하여 각기 다른 용의자들은 서로 다르게 반응하게 마련인데, 특정한 용의자가 만약 진범이라면 그 용의자가 특정한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게 마련인데, 특정한 용의자가 만약 진범이라면 그 용의자가 특정한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지를 프로파일링기법은 수사관에게 알려줄 수 있다. 따라서 범죄자 유형분석기법은 가장 혐의가 짙은 용의자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고, 확실한 물적 증거가 확보되기 이전이라도 일선 수사관들이 확신을 가지고 용의자를 계속 추적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준다.

예를 들어, 프로파일링기법은 정신상태가 혼란스럽고 사회적으로 낙오된 유형의 범죄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동정심을 보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쓰면서 상담가와 같은 태도로 대하는 것이 범인으로부터 솔직한 자백을 이끌어 낼 가능성이 높고 밤에 심문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등의 조언을 할 수 있다. 반면에, 정신상태가 정연하고 지능적이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회거부형의 범죄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고 직설적인 심문을 해야 하며 논리적으로 상대를 제압해야만 범인이 거짓된 허위자백을 포기하고 솔직한 답변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범죄자의 심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처럼, 범죄심리학의 연구성과들을 해양경찰수사에 활용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의 방안들이 존재한다. 이상의 방안들 중에서 이제부터 범죄자 유형분석기법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앞으로 이 기법을 우리 해양경찰의 범죄수사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과 범죄심리 분석기법의 활용 방안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기로 하겠다.

제 5 장 범죄자 유형분석기법에 대한 접근

제 1 절 범죄자 유형분석기법의 전제

제 1 항 범죄현장에서 범죄자 성격이 드러난다.

범죄현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범죄자의 성격파악을 통해 수사의 방향을 제시하고 수사의 범위를 좁혀 줌으로써 경찰의 수사활동을 도와준다는 것이다. 인간의 행동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심리상태가 외적으로 표현된 것 이라고 하면, 정상적인 일상활동에서 뿐만 아니라 범죄행위에서도 그 사람의 성격이나 심리를 드러내는 흔적들이 많이 발견되어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치 심리검사에 이상심리의 징후들이 포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범죄현장은 범죄자의 있을지도 모르는 정신병리적인 성격을 반영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범행현장에 남아 있는 물리적 증거들과 심리적 증거들을 토대로 해당 범죄를 저지른 범인의 성격과 특성을 추론하는 방법을 통해 범죄자의 유형을 파악하여 경찰수사를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수사기법이 보다 많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풍부하고 다양한 범죄사례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해 각각의 범죄유형에 따라 시대적·사회적 맥락을 반영하면서 적절하게 구분된 범죄자에 대한 분류체계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요구되어진다. 예를 들어, 미국의 연방수사국에서는 주로 연쇄살인범죄자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작성하려는 의도에서 살인범을 두 개의 범주로 분류하는데, 하나는 ‘비조직적인 소외형 범죄자’이고,

다른 하나는 ‘조직적인 사회거부형 범죄자’이다. 이 두 유형의 범죄자들은 항상 홀로 시간을 보내는 ‘고독자’라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진다. 그런데 그들이 고독자인 이유는 두 유형에서 매우 상반된다. ‘비조직적인 소외형 범죄자’는 사회일반인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 혹은 기괴하다는 느낌을 주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회피하는 신체적, 심리적, 행동적 특징을 가진 유형이다. 반면에 ‘조직적인 사회거부형 범죄자’는 타인을 멸시하거나 어리석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타인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비사교적인 성격 때문에 홀로 시간을 보내는 유형이다. 이유가 어떻든 두 부류의 범죄자는 무의식 깊은 곳에 불특정 다수의 타인에 대한 증오심, 복수심, 새디즘 등을 가진다는 것이 미국의 연방수사국 사인범 분류체계의 기본 가정이다. 이런 두 유형의 범죄자들은 범죄를 저지르는데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비조직적인 소외형 범죄자’의 경우는 범죄가 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비합리적이거나 다소 어리석어 보이는 요소를 많이 드러내는 반면에 ‘조직적인 사회거부형 범죄자’의 범죄는 계획성, 합리성, 치밀성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현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살인범이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초기수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미국의 연방수사국에서 범죄분류방법과 범죄자 유형분석기법을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연구하여 실제 범죄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주역중의 한 사람은 살인범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는 범인이 ‘조직적’인지 아니면 ‘비조직적’인지 혹은 이 두 가지가 혼합된 타입인지 구분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가드윈이란 학자는 미연방수사국의 범죄자 유형분석체계에 대한 비판에 기초하여 ‘의미론적 요인모형’이라고 명명한 새로운 체계를 제안하였다. 그는 범죄자를 이분적으로 분류하는 대신에 두 개의 차원에 의해 4개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차원인 행동조직성요인은 공격적 행동이 통제되건 계산

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폭발적이거나 난잡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두 번째 차원인 집착요인은 가해자가 특정한 피해자에게 개별적으로 가지는 집착의 정도를 나타내는 차원이다. 피해자에 대하여 낮은 수준의 집착을 가지는 범죄자는 인간, 여성 등의 불특정 다수에 대한 자신의 분노나 생각을 해소할 목적으로 그 특정한 피해자를 단지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범죄자이다. 반면에 피해자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집착을 가지는 범죄자는 그 특정한 피해자에게 고통을 유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제 2 항 같은 범죄자 범죄수법은 횡수가 증가해도 같다.

서로 다른 두 명의 범죄자가 똑같을 수 없는 것처럼, 두 군데의 서로 다른 범죄현장이 똑같을 수가 없다. 하지만 같은 유형의 범죄를 여러 번 반복해서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익숙하고 편하게 생각되는 비슷한 범행수법을 계속해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범행수법도 다른 인간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보고 듣고 배운 것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범행횡수가 늘어나고 경험이 쌓일수록 자신의 범행을 보다 수월하고 효과적으로 완수하면서도 수사기관에 붙잡힐 위험이 가장 적고 범죄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수법을 정교하게 세련화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자신이 선호하는 범행수법이 급격하게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제 3 항 범죄자 자신만의 방식은 똑같이 남아 있다.

범죄자의 독특한 방식은 어떤 범죄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강간범이 피해자에게 사용한 어떤 말들이 될 수도 있으며 범인이 범행현장에 어떤 징표를 남겨두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서로 수 백 마일이나 떨어진 미국의 다른 주에서 흉기로 살해된 나이 많은 노부인과 젊은 남성의 시신이 각각 발견된 적이 있다고 하자. 두 사건에서 모두 피해자의 복부위에 피해자의 운전면허증과 자동차 열쇠를 남겨 두었다면, 두 사건에서 희생된 피해자의 특성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저지른 독특한 방식을 고려하여 동일범의 소행으로 간주하고 수사관할구역이 다른 두 지역 수사관들이 긴밀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협조하여 결국 범인을 검거한 사례가 있었다.

제 4 항 가해자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가장 핵심적인 성격은 단기간에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특성이 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성격을 바꾸려고 노력하여도 그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범죄자는 유사한 범죄를 반복하게 되고, 각 범죄행각에서 비슷한 각본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며 결국 유사한 행동패턴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 개인이 가진 성격의 일부를 개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한번 성격의 핵심적인 부분들이 형성되고 나면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하거나 주위 사람들의 압력이 있는 경우에 단지 약간의 변화만이 있을 뿐이다. 범죄자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성격을 형

성하는데 오랜 동안의 시간이 걸린 것이고, 따라서 짧은 시간에 성격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심지어 어떤 범죄자들은 스스로 비슷한 범죄패턴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억 속에 있는 각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전의 범행에서 희생된 피해자들이 범죄현장에서 보여주었던 행동을 그대로 다시 재현하도록 강요한다고 보고된 경우도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범죄자 유형분석기법의 기본전제들은 요약하면, 범죄현장은 범죄자의 성격을 반영하고, 범죄자는 자신이 즐겨 사용하는 범죄수법을 고집하며, 자신의 범행임을 암시하는 독특한 범행의 흔적을 남기고, 그리고 범죄자의 성격은 단기간에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전제들을 염두에 두고 범죄자 유형분석기법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범죄수사의 방향을 정하고 용의자를 압축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범죄자 유형분석기법의 한계

범죄자 유형분석이 전향적인 수사기법으로 응용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하기는 하지만, 이 기법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첫째로, 범죄자 유형분석기법이 물질적인 증거수집을 중시하는 과학수사기법 자체는 아니며, 범죄자 프로파일에서 묘사한 특징들에 들어맞는 용의자가 자동적으로 유죄임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유형분석기법의 사용은 결코 과학적이고 엄밀한 수사절차나 범의학적 전문지식에 기초한 검사를 대신할 수가 없고 과학수사에 대한 보완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사실, 범죄자 유형분석기법의 중요한 토대는 범죄현장에 대한 과학수사기법을 활용한 완벽한 조사와 피해자와 목격자에 대한 철저한 면접조

사에 있다. 왜냐하면, 범행 장소에 대한 과학적이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물질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범인이 가진 성격 특성과 범행당시의 심리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인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범인을 직접 대면한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과 그들이 관찰을 통해 파악한 범인의 행동상의 특징들은 범인의 유형을 추정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랜 동안 수사현장에서 범죄자 유형분석기법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미연방수사국의 한 퇴직수사관이 “범인을 체포한 것은 범죄자 유형분석기법이 아니라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들, 일반 시민들의 협조, 그리고 약간의 행운이 따른 적이었다. 범죄자 유형분석기법은 수사상의 도구였고, 위험스러운 살인범에 대한 수사 범위를 현저히 좁힌 도구일 뿐 이었다”라고 한 진술의 의미를 잘 새겨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범죄자 유형분석기법에서 사용하는 추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범죄자들에 대한 범죄심리분석이 선행되어 풍부한 사례들에 대한 기초자료들이 축적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와 심층면접을 통해 범죄심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령술사처럼 범인을 지목해 내도록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범죄유형별로 독특한 심리학적 특징을 가진 범죄자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추정되는 범죄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사건의 범인에 대한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범죄심리분석을 통해 범인의 내면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충분히 축적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범인검거직후의 심층면접과 교도소에서의 면회를 통한 심층면접이 있는데, 범인에게서 솔직한 진술을 이끌어 내는 데에는 이미 재판이 끝나 여죄추궁의 부담이 없는 교도소에서의 심층면접실시가 유리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축적된 범죄자의 범행동기와 범행현장에서의 심리상태 및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이해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범죄자의 유형을 파악하고 용의자의 범위를 압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미국의 연방수사국의 행동과학부에서 처음에 범죄자 프로파일링기법을 활용하려는 시도를 한 이유는 흉악범, 특히 연쇄살인범들의 생각을 이해하려는 노력의 일부로 전향적인 수사기법의 도입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이었다. 전통적인 살인범의 범행동기인 개인적인 원한이나 재물에 대한 욕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돈과는 무관하게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범인들은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통상적인 범죄자들과는 근본적으로 질이 다르다. 이와 같이 새로운 유형의 살인범, 강간범, 유괴범들은 그들의 범죄에서 금전적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똥하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서적 만족을 추구하는 특성을 보였다. 때문에 그들은 통상적인 범죄자들과 다르고, 그 때문에 미국 연방수사국의 수사관들로부터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세 번째로, 범죄자 유형분석기법을 통해 범인의 신원을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범죄자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수사관들이나 연구자들은 종종 범죄자 프로파일링기법이 직접적으로 범인을 검거하도록 해주지 못한다고 불평하면서 이 기법을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실패라고 성급하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수사기관에서 시도했던 모든 범죄자 프로파일링이 언제나 범죄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가드윈같은 학자는 프로파일링의 90%는 범죄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 바 있고 월슨과 그의 동료들은 거의 모든 프로파일링은 심각한 결함을 가진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심지어 이 기법을 발전시킨 미국연방수사국의 자체조사에서도 과거 범죄자 유형분석기법이 활용된 사건 중 17%만이 실제 범죄해결에 도움이 되었다는 통계를 발표한 적이 있다. 이렇듯 실용적인 심리분석의 길은 멀고도 험한 듯 보여진다.

제 6 장 결 론

해양경찰은 2006년 이래로 현재까지 과학수사 특채 중 심리분야 전문가는 2명뿐이며 그마저도 이 분들이 활동할 영역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실제 과학수사 특별채용자(심리분야) 2명중 1명만이 현재 근무 중이며 체계적 관리 부실로 전문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검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앞으로 해양경찰에게는 현재보다 더 많은 자율적인 수사 권한이 부여되게 될 것이고, 그에 비례하여 국민들이 해양경찰의 수사를 바라보는 시각과 기준 또한 한층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해양경찰은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의 역량을 제고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수사 각각의 전문분야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해양의 여러 가지 특성상 과학수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필연적으로 많아지게 되고, 법원의 재판이 증거 위주의 공판 중심으로 진행됨에 따라 수사를 직접 담당했던 수사관의 법정 증언이 재판의 핵심적이며 결정적인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신력 있는 범죄분석요원의 심리수사 활동은 수사단계에서 필요함은 물론이고 장차 해양경찰 수사의 신뢰도와 위상을 높이는 데 있어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판결단계 이전 목격자 진술에 대한 심리분석(관련 연구들을 종합할 때 목격자 진술의 정확성은 50% 정도)이 필요하며, 두 번째, 수사관이 목격자나 용의자에게서 혹은 변호사나 검사가 증인에게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더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는 면담기법의 개발. 면담자가 내담자(목격자 혹은 증인)의 기억 활성화를 위한 보조자 역할을 강조하는 인지면담 기법 등은 활용가치가 있다하겠다. 세 번째, 신문과 자백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를

통해 주로 자백이 거짓이었음이 밝혀진 사례들을 분석하여 허위자백의 특징과 허위자백을 하는 상황특성 파악하여 매뉴얼화 하고 범죄자 프로파일링을 위해 범죄자의 유형에 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여 용의자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범죄행동의 진위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는 과정들을 체계화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해양경찰의 수사는 작게는 범죄심리분석분야 뿐만 아니라 크게는 객관적 증거에 입각한 과학수사 체계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으며, 이에 따른 인프라(infrastructure) 확충과 첨단과학 기반의 예측 치안 역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7.21.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본청에 과 단위 기구인 과학수사팀이 출범을 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범죄심리수사 분야에서도 장족의 발전을 기대해 보는 바이다.

참고문헌

- 표창원, 이동환, 권일용. (2001). 「범죄심리학적 수사 기법」.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이경식. (2005). 「범죄심리와 과학수사 프로파일링」. Human & books.
- 임준태. (2009). 「프로파일링」. 대영문화사.
- 해양경찰청. (2019) 「2019 해양경찰백서」.
- 해양경찰청. (2018) 「2018 해양경찰백서」.
- 이수정. (2018). 「최신 범죄심리학」. 학지사.
- 이수정. (2009). 「연쇄살인의 심리학적 기제」. 수사연구
- 수사연구사. (2000). 「수사연구」. 이상범죄자, 그 심리를 분석한다.
- 이동환·권일용. (2001). 범죄수사와 심리학. 「한국심리학회 춘계 심포지움 발표자료모음집」. (사)한국심리학회.
- 차재호. (2001). 범죄와 심리학. 「한국심리학회 춘계 심포지움 발표자료모음집」. (사)한국심리학회.
- 허경미. (2008). 「범죄 프로파일링 기법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권창국. (2003). 「범죄자 프로파일링 증거의 활용과 문제점에 관한 검토」. 한국공안행정학회보.
- 박정보. (2007). 「강도살인범죄 프로파일링과 증거법적 유용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윤성. (2006). 「현장에서의 연쇄행동 평가를 통한 범인심리 분석 및 행동

- 추정에 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 차훈진, 정우일. (2011). 「해양범죄의 현황 및 그 대응방안」. 한국범죄심리연구
- 최정호. (2015). 「해양범죄에 대한 과학수사 적용 가능성 연구; 해양경찰 수사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해양경찰학회보
- 강희주. (2017). 「경찰의 과학수사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은경. (2019). 「과학수사와 범심리학」.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박윤주. (2019). 「과학수사와 심리학: 범죄분석요원이 되기 위해」.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차민규. (2018). 「과학수사요원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 윤신규, 송태화. (2017). 「인정 가능한 과학수사 증거들의 신뢰요건; 관리의 연속성 원칙을 요구하는 최근 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한국과학수사학회
- 김상구. (2012).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의 적정인력 배분에 관한 연구; 구성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해양환경안전학회 추계학술발표회 자료
- John JongSoo Park, 양윤석. (2014). 「형사절차상 과학수사 증거물의 취급상의 법적 쟁점」. 과학기술과 법 제5권 제2호
- 김대중. (2017). 「경찰 과학수사 체계를 위한 효율화 방안;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요원을 중심으로」. 중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별첨

심리평가 보고서

등록번호:	○○○○
성명:	○○○(F)
나이:	만 ○○세
교육수준:	대학교 졸업
검사일:	2020. 5. 7.

Description

TEST ADMINISTERED

BGT, HTP, KFD, SCT, K-WAIS-IV, MMPI-2

1. 의뢰사유

수검자는 최근 몇 달간 육아 및 자유로움에 대한 갈등으로 인하여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혼자라는 생각이 자주 들어 언제든지 무언가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을 느껴 이 때문에 남편과 부부갈등이 있음.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외출도 자제하고 있어 더욱 더 정신적 스트레스로 **두통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함.

따라서, 자신의 현 상태에 대하여 궁금하여 임상 심리적 평가를 의뢰하였고 수검자의 인지, 성격, 정서 등 파악을 위해 실시함.

수검자에 따르면 평소 남편은 자녀 양육에 거의 관여하지 않으며, 주말 상관없이 회사에 나가있는 경우가 많아 독박육아를 하고 있다고 함. 특히 남편은 이와 같은 주제로 대화를 나누면 공감을 잘 못하며, 자신의 논리로 합리화 시켜 대화가 어려워진다고 함. 최근 잦은 두통과 불면증으로 신경외과를 방문했지만 이상 소견 없고 신경성이라는 이야기만 들었다고 함. 실제 수검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외출을 통제하고 있어 자기통제가 과도하였음.

수검자에 따르면 만 4세인 아들은 아빠와 둘이 있을 때 매우 서먹함을 느껴 금방 엄마를 찾아 혼자 밖에서 일을 보고 오기 힘들어 육아를 벗어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창살 없는 감옥에 갇

혀 있는 느낌을 자주 느껴 집을 뛰쳐나가고 싶다고 함

2. 검사행동

수검자는 160cm의 키에 외소한 체구였으며, 위생상태 및 눈맞춤, 목소리는 모두 양호했음. 짧은 단발머리에 단정한 옷차림이었으며, 내원 사유를 비롯하여 과거 가족사와 현재 자신이 생각하는 문제 및 증상에 관하여 차분하게 잘 설명하였음.

다만 상담 중에도 마스크 착용상태를 수시로 체크하며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으며, 책상 옆에 놓여 있는 손 소독제를 자주 사용하는 모습이 보였음.

K-WAIS-IV(동형찾기, 기호쓰기, 지우기 소검사)에서, 수검자는 연필 길이에 신경을 많이 썼으며 항상 적정길이를 유지하려고 하였음. 또한 HTP에서 본인이 그린 그림을 보며, 박장대소하는 등 감정표현이 자유롭게 보였음. BGT에서는 제시하는 카드 숫자를 물어본 후 종이를 접어 칸을 나누는 모습을 보였으며, 세로로 제시한 검사용지를 가로로 돌려서 작성하는 모습을 보여줌. 스스로의 그림에 대해 평가를 내리면서 혼잣말을 많이 하였고 점 숫자를 세는 한편, 간격을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든지 각도가 잘 나오지 않으면 자책하는 모습도 종종 보여짐. 지능검사 중 토막짜기 소검사에서는 수행속도가 빠른 편이었으며, 혼잣말을 하면서 맞추는 모습을 보임. 숫자 소검사 시에는 손으로 책상에 숫자를 써가면서 순간 암기력을 높이려고 노력하였음. 특히 퍼즐 소검사를 매우 어려워하였으며, 스스로 자책하는 말을 하는 등 포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임.

수검자는 각 과정마다 비교적 자세히 절차, 방법 등에 대해 물어봤으

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였으며, 검사결과에 대해 걱정하는 말을 수시로 내뱉었음.

전반적으로 수검자는 검사 진행 과정에서 진지하고 사색에 잠긴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검사자에게 협조적이었음. 또한 검사자의 질문에 대하여 웃으며 솔직한 태도를 취하였고 수검자의 검사 수행 속도는 느린 편이었음.

Test Result

1. 인지기능

■ B G 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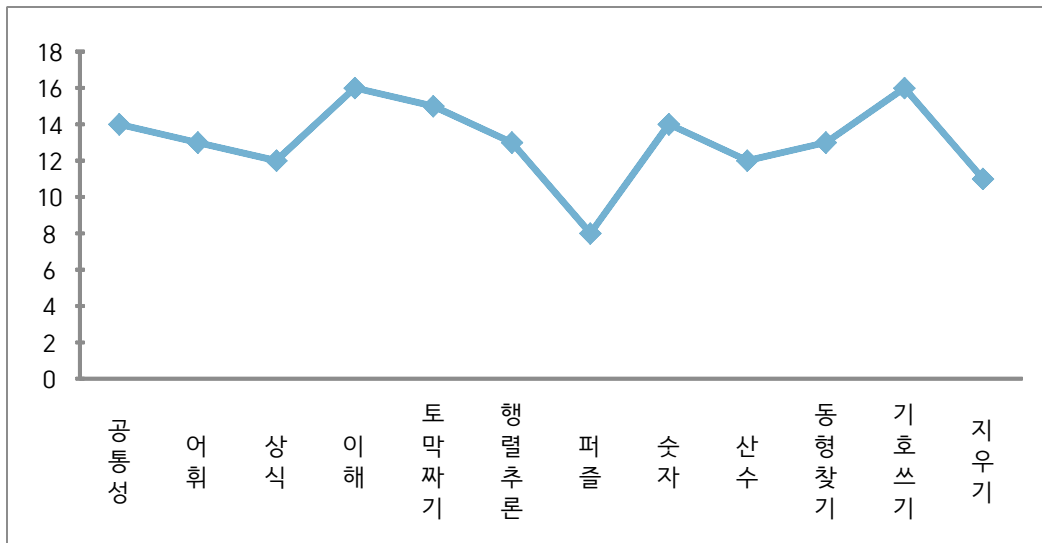
Copy	Recall	
8' 37"	7' 37"	8 / 9

모사 시행에서 수검자는 도형에 대한 심각한 모양의 왜곡이나 변형, 회전 등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용지 활용에서도 도형 배치의 혼란을 보이지 않았고, 그린 도형의 크기 또한 비슷했으며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공간사용을 함. 회상 시행에서는 8개의 도형을 회상해 낸 바, 단기 기억은 적절히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시사됨. 다만, 검사시간이 오래 걸린 것으로 보아 강박적 성격 특성이 보여짐

■ 지능검사

K-WAIS-VI Profile

K-WAIS-VI:	전체 IQ	언어이해	지각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
	123	118	113	117	125



계열	14	13	12	16	15	13	8	14	12	13	16	11
----	----	----	----	----	----	----	---	----	----	----	----	----

한국판 웨슬러 성인용 지능검사 제4판(K-WAIS-VI)로 측정한 수검자의 지적능력은 FSIQ(Full Scale Intelligence Quotient: 전체지능지수) 123(117~127, 95% 신뢰구간), 백분위 94%로서 high(우수 수준)에 해당됨.

언어이해 영역에서는 학습이나 훈련을 통해 획득된 지식이나 어휘 부분에 대한 능력들을 나타내 주는 소검사 점수는 평균수준이며, 문화적

경험·교육적 환경과 관련된 학습능력, 개념의 풍부성, 언어능력, 단어 지식, 개념형성 능력 등을 측정하는 어휘 소검사의 점수가 우수 수준으로 어휘구사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시사되었음

이는 수검자가 후천적인 학습과정을 통해 획득된 기본적인 상식수준 역시 평균 수준으로 잘 발달되어 있고,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적 이해 및 표현력이 적절하게 잘 발달되어 있음을 시사함

지각추론 영역에서는 특히 퍼즐 소검사 점수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피검자가 친숙하지 않은 과제에 직면했을 때 적응 능력과 융통성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인지적 능력이 부족하며, 불확실한 것에 반응하는 능력이나 유연성이 부족함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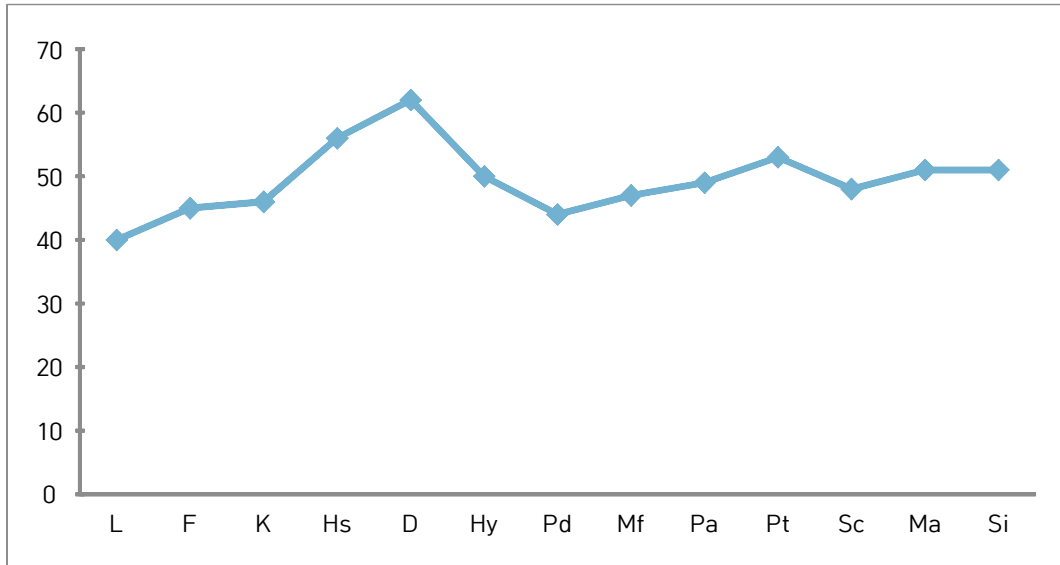
작업기억과 관련하여, 수검자의 숫자 소검사 점수는 평균 상 수준으로, 단순한 자극에 대한 주의력과 청각적 단기 기억력이 적절히 발달되어 있으며 역전능력(거꾸로 따라하기)과 자동적 수준에서의 조직화(바로 따라하기) 능력 또한 잘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시사되었음

처리속도와 관련하여, 동형찾기, 지우기 소검사를 통해 동작성 능력이 우수에서 최우수 수준을 보여줌.

2. 사고

MMPI-2 Profile

L	F	K	Hs	D	Hy	Pd	Mf	Pa	Pt	Sc	Ma	Si
40	45	46	56	62	50	44	47	49	53	48	51	51



수검자는 타당도 척도에서 평범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검사에 성실히 임한 것으로 여겨짐. 자신의 증상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여지며, 임상 척도에서 65T 이상이거나 40T 미만으로 유의미한 척도도 보여지지 않으나 2번 척도에서의 경미한 상승으로 보아 경도형 우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로 인한 심리적, 정서적 불편감을 시사함.

3. 정동, 성격, 대인관계

수검자는 HTP에서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펜의 사용감과 전체적인 스케치 형태를 보면 적절한 필압으로 그렸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피검자의 안정감을 시사함

집그림은 수검자가 현재 가정을 바라보는 관점을 시사하는 경우가 많

은데 이상으로 하는 장래 가정이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과 집 외의 사물을 통해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감을 얻고자 함을 시사함

특히, 나무그림의 경우 보통 종류를 지정하지 않고 그리는 경우가 많으나 수검자의 경우 대나무를 뾰뾰이 그린 모습을 보았을 때 보호받고 싶은 심리사태가 보여지며, 그리면서 생각난 사람을 물었을 때 어렸을 적 키워주신 외할머니가 생각났다고 함

KFD에서는 엄마와 아이와 함께하는 일상과 밖에서 일만하는 아빠를 그림으로 관계의 소원한 상호작용을 보여주고 있으며, 엄마와 아이는 같이 바라보고 있는 반면, 아빠의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친밀감의 거리 및 가족 간 상호작용에 있어 남편의 위치, 집안에서 아빠의 역할을 투사하고 있으며, 엄마와 아이간 애착관계가 시사되고 있음

가정 내에서 본인이 느끼는 정서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시사하는 결과가 나타남 [SCT: “다른 가정과 비교해서 우리 집안은 (드라이하다.)”, “내 생각에 남자들이란 (그 놈이 그 놈)”, “우리 가족이 나에게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길)”, “나의 야망은 (슈퍼우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나의 아이)”, “대개 어머니들이란 (희생과 헌신의 아이콘)”]

Summary

제반 검사 결과, 수검자는 경도우울을 시사하는바 평소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고, 남편으로부터 육아에 대한 부담을 나누지 못함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또한, 아이와의 애착관계로 인해 남편이라는 존재가 있으나 없으나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

수검자 스스로 어떤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어기지 않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을 보임. 이는 기능수준을 갖추지 않으면서 강박적인 것이 아니며, 행동인과관계에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거나 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음

특정한 걱정이 아닌 막연한 걱정은 부동 불안으로 볼 수 없는 바 수검자의 경미한 우울보고는 상세불명의 우울인 기분부전장애로 시사되며 남편의 생활공동체로서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어짐

Diagnostic Impression R/O : Depressive Disorder(NOS)